

# 대전광역시 시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6. 23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기타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 - 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##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 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총괄기금관리관에게”를 “통합기금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복지업무담당국장”을 “복지여성국장”으로, “담당사무관”을 “기금업무 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《참고자료》

구 분	개 정 전	개 정 후
국민기초생활보장법	<p>제44조(보장기금의 적립) ①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삭제 &lt;2006.12.28&gt;</p>	<p>제18조의 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06.12.28]</p>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	<p>제41조 [제26조의 2로 이동 &lt;2007.6.28&gt;]</p>	<p>제26조의 2(자활기금의 설치)            ① 법 제18조의 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[제41조에서 이동&lt;2007.6.28&gt;]</p>

# 《관계법령》

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의3 (자활기금의 적립)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의2 (자활기금의 설치)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□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

제8조(기금의 예탁의무)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